

계약학과 등 설치·운영 지원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		
	대표자	전화번호	
	주소		

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·학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(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·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 절차

